

빈대 관련 연간 보고서 제출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안내

2017년 지역법 69조는 다가구 거주건물 소유주가 매년 건물 사용자로부터 빈대 발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정보와 소유주의 연내 활동에 근거해 작성한 빈대 관련 연간 보고서를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빈대 발견 유무,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다가구 건물 내 빈대 박멸 조치 횟수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사용하여 요구되는 빈대 관련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제출후 HPD에서 수령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 소유주는 지역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고서를 게시하거나 세입자에게 배포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제출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소유주는 건물 내 눈에 띄는 공공 장소에 DOHMH의 빈대 관련 정보 통지서의 사본을 배포 또는 게시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빈대 예방, 감지 및 박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빈대 관련 연간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입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빈대 관련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HPD는 제출 미이행 위반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HPO에서 이 보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부동산이 HPD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부동산 등록 온라인시스템(PROs, <https://a806-pros.nyc.gov/PROs/mdRInternet.html>)에서 등록하거나 212-863-7000번으로 전화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주는 건물에 빈대가 없더라도 빈대 관련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모든 필수 정보를 작성하지 않으면 거부됩니다.

작성된 양식 우편 송부 주소: NYC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 Development
Division of Code Enforcement
100 Gold Street, 6-01
New York, NY 10038

빈대 관련 연간 보고서 제출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부동산 주소: _____
자치구 _____ 등록 ID _____
등록 ID 작성자 이름: _____
(정자체)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24시간 운영되는 번호(해당하는 연간 부동산 등록증의 섹션 10에 명시된 안내
지침을 따름) _____

보고 대상 기간: 2019년 11월 ~ 2020년 10월

섹션 I: 신청자: (하나만 선택)

- 부동산 소유주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 또는 담당 이사
- 부동산 관리 대행인

섹션 II: 1~4번 항목을 작성하십시오. 각 공란에 번호를 하나씩 입력해야 합니다(0 입력 가능).

- 1) 총 거주 가구 수:
다가구 건물 내 총 가구 수(가구의 거주자 유무와 관계 없음).
- 2) 빈대가 발견된 거주 가구 수:
신고 대상 기간 동안 세입자 신고했거나 달리 부동산 소유주에게 알려진 빈대가 발견된 가구 수.
- 3) 박멸 조치한 거주 가구 수:
신고 대상 기간 동안 박멸 조치가 시행된 가구 수.
- 4) 빈대가 재발견된 거주 가구 수:
신고 대상 기간 동안 박멸 조치가 시행된 후에 빈대가 발견되었다고 신고된 가구 수.

섹션 III: 본인은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하나만 선택)

- 제출 후 60일 이내에 이 양식과 DOHMH 빈대 정보 통지서 사본을 건물 내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하고 해당 게시물의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 각 임대 계약 갱신 시 또는 새로운 임대 계약 시작 시 이 양식과 DOHMH 빈대 정보 통지서의 사본을 해당 다가구 내 각 세입자에게 교부하겠습니다.

양식 제출자 서명 _____

날짜 _____